자금세탁방지: CDSA, MAS 고시, FATF 평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전 세계의 자금을 받아들이는 금융중심지는 그 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30여 년에 걸쳐 여러 층으로 그 답을 쌓아 왔습니다. 첫 번째 층은 범죄수익의 세탁을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 있게 하는 형사 법률입니다. 두 번째 층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고시로, 은행, 펀드매니저, 신탁회사 및 기타 기관에 고객을 알고 거래를 감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세 번째 층은 의심 사항을 경찰 내부의 금융정보분석기구로 전달하는 보고 체계입니다. 이 층들 위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FATF의 평가단은 주기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이 장은 각 층과 그 실제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먼저 머리글자를 따 CDSA로 알려진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CDSA)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고객확인에 관한 고시, 의심거래보고 체계, 그리고 2016년과 2026년의 최근 두 차례 상호평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2023년 자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세탁 사건 이후의 개혁을 다룹니다. 사건 자체는 1MDB 사건 및 MAS가 개별 기관에 부과한 제재와 함께 제E편 제VI장의 주제입니다. 조세범죄의 전제범죄 지정은 제E편 제II장, 제재는 제H편 제IV장, 법인의 형사책임은 제H편 제V장에서 다룹니다.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는 제H편의 한 장을 같은 주제에 할애하며, 그 제목은 자금세탁 및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대응입니다. 같은 국제 기준과 상당수의 같은 고객을 공유하는 두 금융중심지는 같은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자산관리 중심지는 비밀 유지로 살아가는 반면, 자금세탁방지 체제는 정보 공개로 살아갑니다. 각 중심지가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는 그 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장 끝의 비교는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핵심 요약

싱가포르는 CDSA에서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CDSA는 1992년 마약 수익에 대한 법률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싱가포르 국내외에서 저질러진 긴 목록의 중대범죄를 포괄합니다. 2024년부터는 경솔하거나 과실에 의한 자금세탁과 특정 형태의 자금 운반책(money mule) 행위도 처벌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추가 개정으로 검찰은 세탁된 재산이 실제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증명할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MAS 고시 626(MAS Notice 626)과 다른 부문을 위한 상응 고시는 고객확인,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조치, 재산 형성 경위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영업 과정에서 재산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심거래보고사무소(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Office, STRO)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무소는 2024년에 8만 5,988건의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2026년 5월 공표된 FATF 평가는 싱가포르를 정기 후속점검 대상으로 분류하면서도, 낮은 제재 수준과 실질적 소유자 투명성의 약점을 비판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